

의안
번호

230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육영 의원 외 14명

나. 의안번호 : 제230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생산품의 범위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기업 제품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적용범위 추가(안 제3조)
- 다.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(안 제6조)
- 라.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,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11. 07. ~ 2023. 11. 13.
 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<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> · <장애인기업제품> 을 우선구매 범위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, 제3조, 제6조제1항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 조문을 정비 한 것이며,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범위에 <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> · <장애인기업제품> 을 추가함에 따라 각 조문에 이를 반영하였음.
- 안 제5조제2호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1)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·출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 산하 출연·투자·출자기관을 삭제하였고, 안 제5조제3호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구의회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추가하였음.

1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가. 국가기관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)

나.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를 말한다)
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마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바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
사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청

아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·공립 교육기관

-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을 정비하고 「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그 밖에 개정안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에 따른 ‘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’ 및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‘장애인기업제품’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조례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적극적인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고,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높인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 됨.

참고자료

〈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 개정 전·후 비교〉

개 정 전	개 정 후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(생산품 구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,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,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	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(생산품 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8조(생산품 구매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<삭제>

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(이하 “우선구매대상물품”이라 한다)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. 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 ⑥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> 1.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.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2.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	
--	--

3.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[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 1명은 일반장애인의 1.5배수로 산정한다]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·소재지·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,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